

보도시점 2026. 7. 30.(목) 조간 배포 2026. 7. 29.(수)
2026. 7. 29.(수) 12:00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 7월 30일부터 282개 장기요양기관 통해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 -
- 이동보조부터 진료·약 수령 등 전 과정 지원으로 가족의 동행 부담 완화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창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왔으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법정 배치기준보다 추가로 배치되어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정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380)
		담당자	사무관	권고운 (044-202-3499)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책임자	부 장	홍성현 (033-736-1904)
		담당자	팀 장	이보영 (033-736-197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7.30. ~ 12.31.
- (수행기관) ①통합재가기관(방문요양 소속 요양보호사), ②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추가배치가산 간호(조무)사)
- (이용대상) ①통합재가기관 이용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②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1~5등급)
- (사업내용) 이동 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쏘 진료 과정 돌봄 및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도보 이용 또는 지자체 교통약자차량 연계

□ 급여비용

- (통합재가기관 방문요양보호사 제공) ① 180분 미만 왕복 34,120원 / 180분 이상 왕복 57,020원, (편도 50% 적용) ② 통합재가기관 인센티브 월 10만 원(5명 이상 제공), ③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적용
- 주·야간보호 중 병원동행 제공하는 경우 주·야간보호·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시간 모두 인정(병원동행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협약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제공) 왕복 10,000원*
* 편도 5,000원,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한도) 이용자 1인당 연 50만 원 범위 내 이용 가능
* 병원동행 이용 시 서비스 수가만큼 연간 이용한도에서 차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3-736-1970,3~4)